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5조제4항에 따른 (압수
일시보관) 물건 봉인 표지

범칙혐의자 성명(법인명)

년 월 일

범칙사건조사공무원

(서명 또는 인)

※ 이 봉표를 훼손하거나 그 안의 물건을 인출하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03조(체납처분 면탈) 및 「형법」 제140조(공무상비밀표시무효)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.

(바탕색: 노란색)

210mm×90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